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 >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02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제220890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 (안 제61조제6항 신설)	2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220890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안 제61조제6항 신설)

현행법 제61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도로관리청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시설 종류,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행	개정안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 <u>2. 도로의 너비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u>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두의 1층’ 프로젝트²⁾가 진행되었고, 대법원은 2024. 12. 19.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청의 행정입법 부작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³⁾.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높이 차이 제거 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에 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⁴⁾에는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등이 있음.

2) 모두의 1층 프로젝트는 경사로 컨설팅 및 설치 지원, 시민 캠페인 운영,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시민단체 주도의 프로젝트임.(<https://모두의1층.org> 검색일 2025.6.4.)

3)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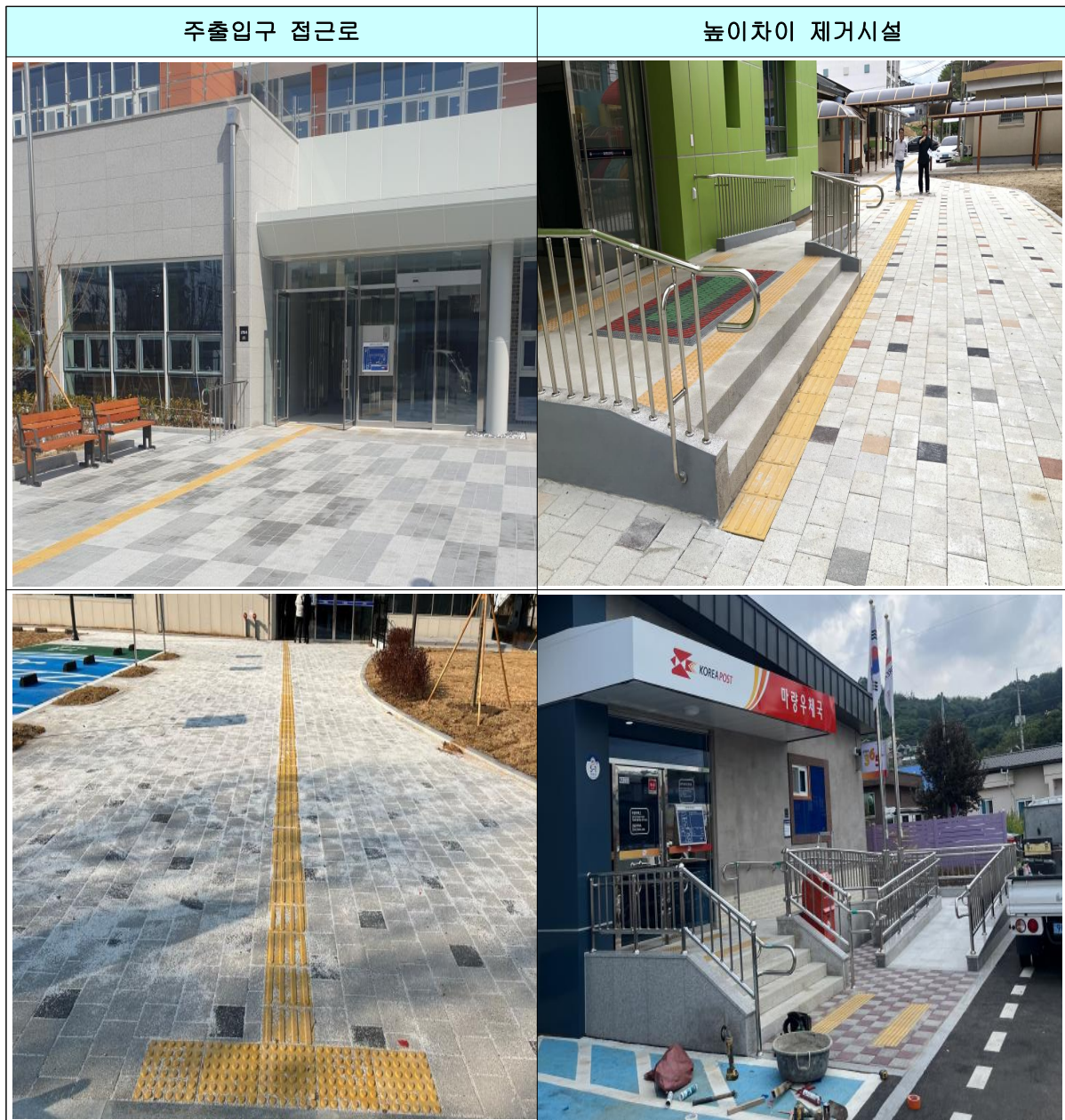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및 별표 2 중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편의시설 유형은 【참고자료 1】 참조

【 주출입구 접근로 및 높이차이 제거시설 사례 】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도로를 당초 용도 외의 목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인 도로점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행자의 통행 등 도로의 본래 기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다른 공익상의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⁵⁾ 개정안은 현재 도로관리청의 재량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특정 목적의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가를 의무화하되, 예외적으로 기준 미달,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일부에 대해 허가하지 않을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임.

따라서 예외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통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재량이 부여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시설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하수도, 전기, 철도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시행령 제55조) 】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

5)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셋째, 개정안과는 별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 반려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의 확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한 사례에 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반려 대상, 반려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⁶⁾ 관련 실태파악을

6) 국토교통부에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자료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부산, 대구, 인천 등 9개 광역지자체) 기준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건 중 반려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2025년 대전 중구 목

통해 도로점용허가 기준 보완⁷⁾, 관련 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넷째, 개정안과 같은 규정을 도입할 경우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경과조치와 같은 부칙 마련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제20대 국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6377호)이 발의된 바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보행자의 보행권은 도로를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재량권 제한 시 보행자의 보행권 침해가 우려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는 상하수도, 전기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용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점용물

동에 소재한 MG새마을금고에서 높이차이 제거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대전시 중구청에서 '좁은 인도폭으로 인하여 보행자 걸려 넘어짐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를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례를 확인함.

7) 현행 도로점용허가 기준에는 모든 점용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대규모 시설물(전봇대·전선, 지하관로 등) 또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고가도로 하부 시설물에 대한 특별기준(점용장소의 제한)이 있고, 이 경우 일반기준과 특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며, 현재 장애인등 편의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구체적인 도로점용허가 기준은 【참고자료 2】 참조

과의 규율 형평성을 감안할 때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장애인등 편의시설 유형 (개정안 적용대상 시설 붉은색 표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 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 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 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산후조리원 (500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500 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지역아동센터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300제 곱미터 이상만 해당 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 ·음식·빵·떡·과 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일반음식점 (50제 곱미터 이상 300 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공연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안마시술소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 한 시설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학원, 교습소, 직 업훈련소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독서실, 기원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집회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전시장, 동·식물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유 자시 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관광숙박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공 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자동 차관 련시 설	주차장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운전학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의 시설(1000제 곱미터 이상만 해 당한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전신전화국,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용 도의 시설(1000제 곱미터 이상만 해 당한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교정 시설	교도소 · 구치소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 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휴게소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장례식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 상 시 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장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편의시설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 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머리뼈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제54조제5항 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봇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봇대·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2) 동일 노선의 전봇대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할 것
-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 3) 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 다만,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수도관: 1.2미터 이상
 - 나) 가스관·전기관: 1.0미터 이상
 -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이상
 -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 나)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 4) 송유관을 도로노면 외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띄울 것
 -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 전봇대·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무너짐·낙하·벗겨짐·오손(汚損)·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2) 전봇대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와 같은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맨홀)와 같이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지점 경계선의 안쪽에 설치할 것
-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물 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